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864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29조, 민법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8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3나19427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임BA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B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4. 20. 선고 2003나19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9. 11. 30. 주식회사에DA팀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5천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신CA기금 업무위탁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업무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용보증원금 3,500만 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신용보증기간 1999. 11. 30.부터 2000. 11.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내용으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기업일반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1. 4. 2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01. 9. 10. 피고에게 대출원금 3,500만 원, 이자 1,464,515원, 합계 36,464,515원의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운전자금 보증한도가 남아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업무 수탁자인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사정하지 않은 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사실, 피고가 위탁보증의 심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증업무 수탁기관들에게 통지한 위탁보증심EA요령(1997. 3. 10. 제정되었다가 1998. 8. 26.자로 개정된 바 있음, 이하 '심EA요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37조에는 동일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신용조사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으로 산출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에서 기금의 기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기술신CA기금의 보증금액(단, 각 특별보증 중 할인어음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과 재보증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산출하되(제36조 제1항, 제5항), 기금에서 취급한 납세보증, 이행보증, 신기술개발 및 신기술기업화 자금에 대한 보증으로서 소요자금 이내의 보증은 위 제36조에 불구하고 위 운전자금보증 사정한도에서 제외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37조, 이하 위 제37조 소정의 보증을 '사정특례보증'이라고 한다)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을 제3호증, 이하 '심사기준표'라고 한다)에도 같은 취지의 심EA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1998년도 매출액은 1,046,770,455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보증한도는

261,692,613원이 되고, 같은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보증액으로는 기술신CA기금의 4억 2,400만 원 상당의 보증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 제8조 및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보증채무 면책기준'(을 제7호증)에서는 수탁기관이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에 대한 종속채무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당시의 소외 회사의 보증한도액 261,692,613원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기술신CA기금의 기존 보증액 424,000,000원을 차감하면 잔여 보증취급한도액이 남아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CA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이상 위 보증채무 면책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는 한편, 위 기술신CA기금의 기존 보증액이 위 심EA요령 제37조 소정의 사정특례보증에 해당하므로 위 보증한도액에서 차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은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하는 근거로서 1998. 4. 14.자로 피고가 이 사건 심EA요령 운용에 대한 업무지도(을 제4호증)를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기술신CA기금의 보증은 모두 1/4 대상 보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그 구체적 사례까지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술신CA기금의 기존 보증이 위 사정특례보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없고, 오히려 1999. 11. 30.자 보증한도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정특례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1998. 4. 14.자 업무지도의 기재 내용 및 수록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 업무지도는 운전자금 보증한도액 산출에 관한 위 심EA요령 제36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제2항에서

규정한 상업어음할인의 보증한도액 예외규정(매출액의 1/2)은 피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술신CA기금의 경우에는 어음할인보증이라 해도 예외 없이 일반적 보증한도액(매출액의 1/4)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힌 것일 뿐 위 심EA요령 제37조 소정의 사정특례보증의 해석에 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 위 사정특례보증에 관한 규정에 기초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심EA요령 제정 이전에 적용되었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제11조에서는 피고와 기술신CA기금을 구별하지 않고 '납세보증, 이행보증, 신기술보증,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보증, 담보어음보증'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사정특례보증으로 취급하고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심EA요령을 제정하면서 사정특례보증의 대상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보증 및 담보어음보증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두었는데, 그 중 신기술보증은 오로지 기술신CA기금만이 취급하는 보증상품인 점, ② 피고가 1997. 3. 12.자로 원고에게 위 심EA요령 전문에 첨부하여 통보한 '주요사항변경대비요약표'에도 기술신CA기금의 보증이 사정특례보증의 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심EA요령 제36조 제5항에서는 동 제36조 제1 내지 4항에 따라 산출한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의 차감에 있어서 피고의 기운전자금 보증금액과 기술신CA기금의 보증금액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심사기준표 유의사항 제2의 바.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심사기준표를 기초로 피고가 작성한 보증한도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수탁보증 취급가능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기술신CA기금의 위 종전 보증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유의사항 1, 2항)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신CA기금의 종전 보증이 위 심EA요령 제37조 소정의 사정특례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기술신CA기금의 위 종전 보증이 이 사건 심EA요령 제37조 소정의 사정특례보증 중 신기술개발보증을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보증한도액 사정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여 왔음에 대해 피고는 그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단지 위 사정특례의 규정은 피고를 의미하는 '기금'이 취급한 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술신CA기금의 보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만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데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기술신CA기금의 위 종전 보증(을 제6호증에는 그

내역이 '정보화촉진기금대출'의 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EA요령 제37조 소정의 신기술개발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이 사건 심EA요령 제37조의 제정경위 및 기술신CA기금의 위 종전 보증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기타 앞에서 실시한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원·피고의 각 주장사실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통해서 그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간단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당시의 소외 회사의 보증한도액 261,692,613원에서 차감되어야 할 보증금액이 기술신CA기금의 위 종전 보증액 424,000,000원 전액임을 전제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도 인정하다시피 이 사건 신CA기금 업무위탁계약 제8조 및 그에 기초한 위 보증채무 면책기준에서는 수탁기관이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에 대한 종속채무'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면책 여부 및 면책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청구 당시의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 종속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밝힌 다음 피고의 면책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보증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